

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			※ 응시번호
응 시 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	사 진 3cm × 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)
	주 소 (전화번호:)		
응시 행정사 종류		(외국어:)	응시지역
시험면제 (해당지만 표시)	제1차시험 면제 (해당 사항 [√] 표시)	☐ 「행정사법」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해당자 ☐ 「행정사법」 제9조제1항제1호나목 해당자 ☐ 「행정사법」 제9조제1항제2호 해당자 ☐ 「행정사법」 제9조제1항제3호 해당자 ☐ 「행정사법」 제9조제4항 해당자 ☐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법률 제9212호 행정사법제6조제1항 해당자	
	제1차시험 전부와 제2차시험 일부 면제 (해당 사항 [√] 표시)	☐ 「행정사법」 제9조제2항제1호가목 해당자 ☐ 「행정사법」 제9조제2항제1호나목 해당자 ☐ 「행정사법」 제9조제2항제2호가목 해당자 ☐ 「행정사법」 제9조제2항제2호나목 해당자 ☐ 「행정사법」 제9조제2항제3호 해당자 ☐ 「행정사법」 제9조제2항제4호 해당자	
	전부 면제 (해당 사항 [√] 표시)	※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 ☐ 법률 제9212호 행정사법 제6조제2항제1호 해당자 ☐ 법률 제9212호 행정사법 제6조제2항제2호 해당자 ☐ 법률 제9212호 행정사법 제6조제2항제3호 해당자	
	※ 첨부서류: 1.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(시험이 면제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 2.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(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		
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.			
		응시자:	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			

응시자 주의사항

1.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응시자가 제출한 사진으로 응시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응시자에게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사진을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 제출된 응시원서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어도 반환되지 않으며,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착오 또는 거짓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3. 수수료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: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 - 나.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: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
 - 다.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: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
 - 라.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: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
4.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 해당 외국어과목의 응시언어를 적어야 합니다.
5.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외국어시험의 쓰기과목시험 성적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6. 시험면제 대상자는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7.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응시표와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·여권·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, 공무원증·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]을 지참해야 합니다.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응시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험시행일까지 재발급받아야 하며,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
8.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장에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 위에 두어야 하며,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. 한 과목이라도 시험을 보지 않은 응시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9. 제 1 차시험의 OMR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으로 적어야 하며,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. 제 2 차시험 답안지는 검은색이나 파란색 필기구(사인펜, 컬러펜, 연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)로 작성하되, 과목별로 같은 색의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10. 시험시간에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.
11.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하고,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「행정사법」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